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711
----------	------

2017년 4월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김혜련 의원(찬성자 20명)
- 나. 제출일자 : 2017년 4월 3일
- 다. 회부일자 : 2017년 4월 5일
- 라. 상정결과 :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년 4월 20일, 상정·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혜련 의원)

가. 제안이유

- 생활문화는 시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예술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반 시민의 문화 향유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문화 정책의 주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음.
- 시민들의 자발성에 기반한 생활문화를 펼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서 생활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확충해야 할 의무가 서울시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 또한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지역 예술인과 주민의 교류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의 지역 문화적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공공적 자산으로서 생활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의2)
- (2) 문화 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6조의2)
- (3)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과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에 대한 생활문화시설활용, 사용자의 생활문화시설 이용 제한 및 취소·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3)
- (4)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협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안 제10조)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3)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정옥)

가. 개정안 개요

- 동 개정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문화 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생활문화시설의 범위를 정의하여 시설 확충과 지원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음.

나. 조례 개정 배경

- 현행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예술인 복지법」에 의해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생활예술을 통해 문화향유 수준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 및 문화도시 실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17년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서울시는 동 조례의 제정과 함께 2016년도 하반기에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내 생활문화팀을 신설한 바 있으며, 서울문화재단은 동 조례와 관련된 사업을 2017년도부터 수행 중에 있음.

〈표 1〉 생활문화 관련 서울문화재단 2017년 예산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반영 현황	비고
1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	2,200	출연금(서울문화재단 고유사업)
2	생활문화 활성화	4,343	출연금(서울문화재단 고유사업)
	총 액	6,543	

- 동 조례는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생활문화 진흥 사업 운영·지원,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지원단 설치·운영,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협치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동 조례와 유사 조례인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는 2014년 8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시행 중에 있는데,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개정안은 이러한 조문을 삽입하여 시민들의 생활문화 향유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다. 개정안 내용

- 안 제2조2(생활문화시설의 범위)의 경우,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법제처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거나 그 시행을 위한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의 용어정의가 자치법규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입법 경제상 타당치 않으며, 추후 법률 개정 시 자치법규가 그에 맞추어 개정되지 못할 경우 상위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법률에서 용어정의가 된 동일한 용어를 다시 정의하지 않도록 제안하고 있으므로 삭제함이 바람직할 것임.

〈표 1〉 안 제2조의2 수정의견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
<신 설>	<p>제2조의2(생활문화시설의 범위)</p> <p>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물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생활문화시설 5. 제8조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설 	<삭 제>

〈표 2〉 안 제2조의2 및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 비교표

개정안 제2조의2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2(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물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3. 「건축물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생활문화시설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5. 제8조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설	

- 안 제4조(시장의 책무)에서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시민”을 “시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로 수정하는 것은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의 조문을 차용한 것인데,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는 지원대상으로 기술된 것이므로, 동 조례의 목적이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적 활동을 장려하는 것에 있으므로 개정안에서 규정한 좁은 의미보다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현행인 “시민”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표 3〉 안 제4조 수정의견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
제4조(시장의 책무) <u>시장</u> 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u>시민</u> 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u>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u>시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u> 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u>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u>시민</u> 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안 제6조의2(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은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에 근거하여 시장이 같은 법 제11조에 규정된 지역문화실태조사를 통해 문화 격차가 큰 지역, 문화소외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등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표 6〉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

「지역문화진흥법」

- 제9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③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도시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동 조례의 목적 취지와 부합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선언적인 의미에서도 필요한 조문으로 사료됨.

〈표 4〉 안 제6조의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6조의2(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p> <p>① 시장은 관할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 격차 및 문화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p>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 문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p>

- 안 제6조의3(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의 경우, 현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의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종합계획에서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계획 수립 외에도 실질적인 시설 확충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료됨.

〈표 5〉 안 제6조의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6조의3(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p> <p>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한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 사용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이거나 독점적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설치·운영하려는 자의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p>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p> <p>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p>
--	---

그러나 안 제6조의3제3항과 제4항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서울시가 소유한 유휴 공간을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서울시가 소유한 유휴 공간(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변경하는 것 중 ‘생활문화시설’로의 변경은 지극히 예외적인 사례이므로 조례 입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서울시에서 유휴 공간인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한 사례는 (구)질병관리본부를 서울혁신파크로 변경한 건(2014년 4월 1일)이 유일하며, ‘생활문화시설’로의 변경은 한 차례도 없었음.

〈표 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p>「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p> <p>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

- 안 제10조(위원회)의 경우, 입법과정 중 주요골자와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제안되었으나 개정문에는 누락이 되어 부득이 수정이 필요하며,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명’을 추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표 7〉 안 제10조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p>제10조(위원회) ① (생략) 1.~4.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u>생활문화</u> 및 경영관리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⑤ (생략)</p>	<p>제10조(위원회) ① (개정안과 같음) 1.~4. (개정안과 같음)</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u>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과 생활문화</u> 및 경영관리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⑤ (개정안과 같음)</p>

라. 종합 검토 의견

- 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 생활 문화시설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문화 환경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기 위해 제안되었음.

-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대한 정의규정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명기되어 있는 바, 법제처에서 상위법령의 용어 정의가 된 동일한 용어를 자치법규에 다시 정의하지 않도록 제안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문화 환경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은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적 자산으로서 생활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선언적인 의미에서라도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규정의 경우, 실질적인 시설 확충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입법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

가. 수정이유

-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규정의 경우,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내용과 동일하여 상위법령의 용어정의가 된 동일한 용어를 다시 정의하지 않도록 하는 법제처의 제안에 따라 삭제함.
- 동 조례의 목적이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적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므로 개정조례안의 좁은 의미보다 포괄적인 “시민”으로 규정함.
- 생활문화 협치위원회 구성의 경우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개정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의2)
- 시장의 책무 중 “시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를 “시민”으로 수정함(안 제4조)
- 생활문화 협치위원회 구성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안 제10조제2항)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711
----------	---------

제안연월일 : 2017년 2월 27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수정이유

-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규정의 경우,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내용과 동일하여 상위법령의 용어정의가 된 동일한 용어를 다시 정의하지 않도록 하는 법제처의 제안에 따라 삭제함.
- 동 조례의 목적이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적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므로 개정조례안의 좁은 의미보다 포괄적인 “시민”으로 규정함.
- 생활문화 협치위원회 구성의 경우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개정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함.

2. 주요골자

-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의2)
- 시장의 책무 중 “시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를 “시민”으로 수정함(안 제4조)
- 생활문화 협치위원회 구성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안 제10조제2항)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안 제4조 중 “시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를 “시민”으로 한다.

안 제10조제2항 중 “생활문화”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과 생활문화”로 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u>〈신 설〉</u></p>	<p><u>제2조의2(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u> <u>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u> <u>3. 「건축물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u> <u>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생활문화시설</u> <u>5. 제8조에 따른 생활문화센터</u> <u>6. 그 밖에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설</u> 	<p><u>〈삭 제〉</u></p>
<p>제4조(시장의 책무) <u>시</u>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u>시민</u>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p>	<p>제4조(시장의 책무) <u>서울특별시</u>(이하 “<u>시장</u>”이라 한다.)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u>시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u>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p>	<p>제4조(시장의 책무) <u>서울특별시</u>(이하 “<u>시장</u>”이라 한다.)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u>시민</u>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6조의2(문화 환경 취약 지역 우선 지원) ① 시장은 관할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 격차 및 문화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p>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p>	<p>제6조의2(문화 환경 취약 지역 우선 지원)(개정안과 같음)</p>
<p>〈신 설〉</p>	<p>제6조의3(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문</p>	<p>제6조의3(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개정안과 같음)</p>

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한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 사용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이거나 독점적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설치·운영하려는 자의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p>2. <u>시설의 관리 및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u></p> <p>3. <u>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u></p> <p>4. <u>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u></p> <p>5. <u>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u></p> <p>⑥ <u>시장은 제5항에 따른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u></p>	
<p>제10조(위원회) ① (생략)</p> <p>1.~4.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u>생활문화</u> 및 경영관리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⑤ (생략)</p>	<p>제10조(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1.~4.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u>생활문화</u> 및 경영관리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⑤ (현행과 같음)</p>	<p>제10조(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1.~4.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u>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과 생활문화</u> 및 경영관리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⑤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시장은 관할 지역 문화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 격차 및 문화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의3(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한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 사용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이거나 독점적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설치·운영하려는 자의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제2항 중 “생활문화”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과 생활문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장의 책무) <u>시장은</u>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u>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u>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신 설>	<p>제6조의2(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p> <p>① <u>시장은 관할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u> 2. <u>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u> 3. <u>그 밖에 시장이 문화 격차 및 문화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u> <p>② <u>시장은 제1항의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 문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u></p> <p>③ <u>시장은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u></p>
<신 설>	<p>제6조의3(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p> <p>① <u>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② <u>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③ <u>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한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u></p>

④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희 공간 사용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이거나 독점적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설치·운영하려는 자의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위원회) ① (생략)

1.~4.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생활문화 및 경영관리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⑤ (생략)

제10조(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과 생활문화 및 경영관리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⑤ (현행과 같음)